

신탁계약서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~5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6. I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이 15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~5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6. I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이 15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<u>및 집합투자기구</u></p>
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~⑤ (생략)</p> <p>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⑦~⑩ (생략)</p>	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<u>전자우편</u>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한다. 다만, 수익자가 <u>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⑦~⑩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53조(관할법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----- 다만,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</p>	<p>제53조(관할법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----- 다만,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